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93 호 2021. 6. 3.(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22호[하천 점용 변경협의(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2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25호[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734호[행정대집행 영장]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741호[행정대집행 계고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742호[공시송달 공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743호[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746호[공시송달 공고] 1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22호

하천 점용 변경협의(허가)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북**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울산**시 *구 산*로 1*1*(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체육활동공간 확장 및 편의시설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진장동 390번지 외 40필지

나. 면적

- 당초: 23,452m²

- 변경: 25,652m²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 2015. 8. 24. ~ 계속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2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 울산광역시 복구 심청골길 18 외 7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6.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별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순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18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	20210603	건축물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4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43	20210603	건축물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10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46	20210603	건축물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12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4	20210603	건축물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14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3	20210603	건축물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16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1	20210603	건축물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18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0	20210603	건축물멸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22 (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9	20210603	건축물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25호

도시관리계획(도로 :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238	광3-3	중3-97	일 반 도 로	원지1지구	'05.3.24 울고106호	
변경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238	광3-3	중3-97	일 반 도 로	원지1지구	'05.3.24 울고106호	일부구간 도로폭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87	소로3-187	• 일부구간 도로폭 변경	• 도로의 평면곡선구간에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도로폭을 확장하고자 함

다. 관련도면: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인가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84호선 소로3-186호선, 소로3-187호선) 사업
- 명칭: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71-4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사업의 규모(변경)

시설명 (노선명)	구 분	규 모		비 고
		폭(m)	길이(m)	
소로1-184호선	당초	3.0~6.0	49.8	
	변경	4	14	
소로1-187호선	당초	4	68	
	변경	6	238	
소로1-186호선	당초	-	-	
	변경	3	1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마. 사업기간

┌당초 : 2020. 6. 11. ~ 2021. 6. 11.

└변경 : 2020. 6. 11. ~ 2025. 6. 11.

바.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참조

3. 열람내용: 실시계획인가신청서

4. 열람기간: 공보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m ²)	(m 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북구 창평동	1178	도	478	3	울산광역시					
2	북구 창평동	1171-4	전	176	176	울산광역시 북구					
3	북구 창평동	1195	도	548	548	농림축산식품부					
4	북구 창평동	1194	구	632	496	농림축산식품부					
5	북구 창평동	1185-8	답	2,474	50	박○○외 1인					
6	북구 창평동	762-15	답	4	4	권○○					
7	북구 창평동	762-11	대	22	22	권○○					
8	북구 창평동	762-13	전	34	34	권○○					
9	북구 창평동	759-2	도	20	4	박○○					
10	북구 창평동	762-8	답	29	9	박○○외 1인					
11	북구 창평동	762-4	전	185	17	박○○외 1인					
12	북구 창평동	760-5	전	245	35	강○○					
13	북구 창평동	760-1	도	13	5	강○○					
14	북구 창평동	1276-1	도	4,650	26	농림축산식품부					
15	북구 창평동	1276-5	도	80	3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9,590	1,432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1-73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1년 5월 4일, 제2021-60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경작물을 2021년 5월 18일 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복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1년 6월 8일	건설과	시설6급	노선화	1,000,000원 이내

2021년 6월 1일

행정청장

직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1-741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5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경작물을 2021년 5월 7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6월 15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하천법」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동천 일원	경작	41개소	불법경작 원상회복

2021 년 6월 1일

행 정 청 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742호

공시송달 공고

성 명 : 미상
주 소 : 미상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의 불법경작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7.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처분대상

위치	위반사항
시례동 669-2번지	불법경작

6.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상기 기한 내 원상복구 미 이행시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82조(벌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불법시설물 철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52-241-7863)

2021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붙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1-743 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1. 6. 2. ~ 2021. 6. 22.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설치예정장소	비 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19-1	
2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323-10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9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5-1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746호

공시송달 공고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대로3-42호선 외 2개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 <20이지0904>」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명: 대로3-42호선 외 2개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3. 공고기간 : 2021. 06. 03. ~ 2021. 06. 17.
4. 재결서 수령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정성훈	울산시 북구 약수7길 22, A동 402호(중산동,경동 빌라)	재결일: '21.3.25. (이의재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